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6,430호 1999. 6. 30.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814호)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령 제3조).
- 나. 표시·광고의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하고, 시험 또는 조사는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나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이 아닌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이를 행하도록 함(령 제4조).
- 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한국소비자보호원 등으로 함(령 제9조).
- 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자액의 기준을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방법 및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을 정함(령 제12조 등).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

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증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표시·광고한 내용과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함에 있어서 시험이나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개관적이고 타

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이를 행할 것. 다만,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 또는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 의한 시험·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제2호에서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조사기관이 아닌 시험·조사기관을 말한다.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조사관

제5조(실증자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그 내역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시험·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실증내용 또는 결과
4. 실증자료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를 열람·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인정절차)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사업자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정정광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및 그 횟수·크기·매체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미리 그 문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임시중지명령요청 기관·단체) 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 청소년보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5. 기타 사업자등이 행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임시중지명령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자는 이의제기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제기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 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의 산정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상품등의 대가의 합 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체인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매출액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

에게 구슬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관련법조문	과징금 부과기준
1.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법 제3조제1항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10억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각 단계별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
2.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법 제6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 이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5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비고 : 1. 제1호의 각 단계별 부과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회보